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1.03.02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1.02.21. 이 필 레 의원외 9인
- 나. 회부일자 : 2011.02.22.
- 다. 상정일자 :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1.03.02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필 레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,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·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,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3조)
- 2)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(안 제5조)
 - 가)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

- 나) 한부모·조손·다문화·장애 아동
- 다) 지역내 빈곤·학대·방임 가정의 아동
- 라)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
- 마)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
- 3)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 범위 및 사업비 지원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8조)
- 4) 센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·감독하도록 규정함. (안 제9조)
- 5)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0조~제15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, 정서함양을 위하여 신고·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주요내용을 보면,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임에 관한 사항, 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, 한부모·조손·다문화·장애아동, 지역내 빈곤·학대·방임 가정의 아동 그리고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으로 규정하였음.

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 범위 및 사업비 등의 지원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,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

정하였음.

0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제1항에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” 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고,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“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” 로 규정하였음.

0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,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사회 보호개념을 실현하고,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, 정서적 안정 및 문화체험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발굴과 지원강화 등을 통하여 아동들이 보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